

# 예 산 총 칙

200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| 194,477,176 | 5,834,315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| 183,935,979 | 5,518,079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| 10,541,197  | 316,236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| 10,541,197  | 316,236   |
|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         | 512,124     | 15,364    |
|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| 1,488,764   | 44,663    |
| 주차장 특별회계             | 4,651,109   | 139,533   |
|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       | 122,600     | 3,678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 | 497,000     | 14,910    |
| 흥티마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| 2,900,600   | 87,018   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           | 350,000     | 10,500    |
|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         | 19,000      | 570 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45,81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